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준하는 사업비 및 절차를 적용하였으나,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수와 관리가 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 경우

- 현행 : 문화재실측설계업체(설계), 문화재수리업체(시공)
- 변경 : 사업비 절감 및 효율적 보수·관리가 되도록 예외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미래전략담당관-3796(2021.11.17.)]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7227(2021.11.11.)]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14.)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한”을 “등록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하여금”을 “하여금 설계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미한”을 “경미한 보수와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수자격 등) ① 군수는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수할 때에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수자격 등) ① ----- 향토문화유산---------- 등록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하여금 설계 및 ----------. ---------- 경미한 보수와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 ----------.
	<삭 제>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보수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22조(보수자격 등) 조항 삭제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가 되지 않음.

4. 작성자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담당 여인기